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04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제한 및 환수비용 부과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7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12. 16.
- (3) 회 부 일 : 2024.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제한 및 환수비용 부과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금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급여의 환수) ①·② (생략)	제57조(급여의 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비용 환수 및 환수금의 분할납부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하는데,¹⁾

납부 의무자는 환수금 금액에 따라 최대 36회까지 매월 분할하여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음.²⁾

-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에 대하여도 그 외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한다면,

불법행위³⁾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부정수급을 다른 유형의 오지급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

1)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③ 환수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경우 : 2회 이내
2. 환수금이 4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인 경우 : 4회 이내
3. 환수금이 12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4. 환수금이 360만원 이상인 경우 : 36회 이내

3)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록 제한하면서 환수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함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의 동기를 통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환수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필요적절하게 보전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총 22건으로, 건당 평균 부정수급액은 약 360만원임.

□ 참고로, 공무원연금⁴⁾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정하는 금액의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군인연금⁵⁾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⁶⁾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4)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급여의 환수)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5)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부정수급 시 분할납부가 제한되며,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부정수급은 국민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⁷⁾ 그에 대한 환수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기초연금 환수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나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점⁸⁾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의 환수)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7) 「**기초연금법**」 제29조(벌칙)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환수금의 결정·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아울러,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법정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도 부정수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수금의 분할납부가 제한되면서 이자 및 환수비용이 가산·징수되는데,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신고사항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의한 과다수급 시에도 환수시 이자를 가산·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⁹⁾

개정안과 같이 부정수급의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환수비용을 가산할지 또는 법정신고사항의 미신고·지연신고에 의한 과다수급의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환수비용을 가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안 제57조제3항에 규정된 ‘환수비용’의 의미와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9)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경우 부정수급 관련 벌칙조항이 없는 데 반하여 국민연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는데,¹¹⁾

벌칙조항에 더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환수비용까지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 아울러, 부정수급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분할납부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징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 1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 11)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